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5월 2일

○ 회부일자 : 2003년 5월 6일

3.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대부료 연체 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 지방청사 신축시 적정규모로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잠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제22조)

-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 학교용지 등의 목적으로 매각대금을 10년 이내 분납시 이자율 : 5퍼센트 → 4퍼센트

- 외국인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등을 10년 이내 분납으로 매각시 이자율 : 8퍼센트 → 6퍼센트
- 국가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매각대금을 5년 이내 분납시 이자율 : 8퍼센트 → 6퍼센트

○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적용 범위 제한(제23조의2제1항)

- 공유재산을 2년 이상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시 대부료가 전년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 적용하는 대부료 인상을 적용은 영리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농경지로 제한 함

○ 대부료등의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이자 요율 분리적용(제28조제1항)

- 연체요율을 연체기간 정도에 따라 연 12~15퍼센트를 차등적용하도록 함

○ 청사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제47조)

- 지방청사 신축시 표준설계면적기준 명시
-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적용 받지 않는 지방청사 신축 시 1인당 면적기준 등에도 준용하도록 함

○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 신축시 타당성 조사 신설(제47조제3항)

- 50억원 이상인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 신축 시 타당성 조사는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적용토록 함

## 5. 검토의견

###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유재산매각대금의 이자율의 인하와,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적용범위의 제한과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요율을 차등적용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별

표준면적(설계기준과 규모)을 조례로 제도화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재정법 제99조(사용료등의 귀속)의 내용과 중복되어 동 조례 제3조 제2항을 삭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사용료, 대부료, 처분대금, 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귀속 적용례가 동법 시행령과 상이한 바,

동 조례 삭제에 따른 귀속 적용시점에 관한 설명과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는 납부이자율을 1~2%인하(4~6%)하였으나,

제4항의 외국인투자기업 매각대금의 이자율은 4%인데 이를 인하하지 않은 사유,

별표1의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